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

최근 국가상징 거리, 공원, 기념물 등에 대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상징대상, 체계적인 조성원칙, 관리방안 등을 명시한 제도 부재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역-용산-한강을 연결하는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국가상징축 개념 적용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는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보훈’을 포함시켜 국가상징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가하는 국가상징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준,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내셔널 몰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20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실천적 장치 마련

- 최초 계획인 랑팡계획과 이후 수립된 맥밀란계획의 전통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념사업법을 제정하고 기념사업의 절차 및 기준 마련
- 내셔널 몰은 개인에서 위원회, 위원회에서 여러 정부 부처,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단일 부처로 관리체계가 변화하여 현재는 토지소유권자인 국립공원관리청이 담당
- 내셔널 몰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회 참여

미국 기념사업법은 1986년 의회 승인으로 제정되었으며 내셔널 몰과 주변 지역 내 기념사업 승인, 절차, 기준, 디자인 심의 등을 규정

- 국가를 상징하는 사업을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그 외 개인이나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 후, 내셔널몰을 포함한 워싱턴D.C.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승인 절차 명시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① (대상)무엇을 상징하고, ② (입지)어디에서 기억하고, ③ (방법)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필요

- (대상) 역사적 인물, 사건 등에 대한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심의절차 마련 필요
- (입지) 국가상징사업 진행을 위한 적정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상징의 의미와 공간의 활용도 제고 필요
- (방법) 국가상징공간은 기념비와 같은 기념물, 소규모 광장, 메모리얼파크, 도시공원 등 규모를 고려하여 상징 방식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등을 마련할 필요

01 최근 국가상징공간 조성 동향

서울시가 국가상징가로, 국가상징 가로거리, 국가중심축 등과 같이 국가를 상징하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 상징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 부재

-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세종로로 이어지는 축(이전의 육조거리)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고자 2022년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고, 이를 다시 서울역, 용산, 한강대교 남단까지 연결하는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을 발표(서울시 2022a)
 - 광화문광장은 지난 2009년 광화문 복원과 함께 처음 광장으로 조성된 이후 2022년 8월 광화문광장 내 월대복원 등 개선사업을 통해 광화문 앞길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서울시 2022b)
 - 서울시는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총 7km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만들어 공간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자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을 수립(서울시 2022a)
 -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경복궁-서울역-용산-한강을 국가중심축으로 명명하고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도심 비즈니스 허브 기능을 보완하여 활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서울시 2022c)
- 한편,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국가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보존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방향 제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제2항제3호인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을 “역사·보존·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으로 보존 기능을 추가하여 개정 중
 - 또한 제7조제4항제1호인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의 설치”에서는 국가보훈부(현 국가보훈처, 6월 중 승격예정) 장관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보훈부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
- 이렇듯 국가상징공간 및 국가적 사건 등을 기념하는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이미 같은 사례를 경험한 미국 내셔널 몰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
 - 미국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서 시작해 포토맥강까지 이어지는 공간에 내셔널 몰을 조성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과 상징물(조각상 등), 주요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을 약 200여 년에 걸쳐 조성
 - 미국은 내셔널 몰의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후세에 남겨 기념할 것을 구분하기 위해 기념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내셔널 몰 주변지역을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상징공간에 필요한 거버넌스, 제도적 기준의 부재로 인해 어떤 사건을 어디에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체계가 미흡하여 국가적 사건과 기념방식, 기념주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

02 미국의 국가상징공간, 내셔널 몰

-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1790년대 계획 수립 이후 완공을 선언한 2003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 조성된 국가상징공간으로 미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
 -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과 상징물(조각상 등),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
 - 내셔널 몰은 주변에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인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그 외 역사·문화시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상징 기능과 주변 지역 간 연계를 강화

〈표 1〉 내셔널 몰 개요

위 치	미국 워싱턴D.C.	규 모	590,000㎡
조 성 기 간	1791~2003년	계 획	피에르 샤를 랑팡 (Pierre Charles L'Enfant)
관 리 운 영	국립공원관리청(NPS)		
주 요 시 설	대통령 기념관(루즈벨트, 링컨, 토머스 제퍼슨 등), 메모리얼 파크(한국전, 베트남전, 제2차 세계대전, 컬럼비아 특별구 세계대전 기념관, 미국 재향군인 메모리얼 등)		

출처: <https://www.nps.gov/topics/nationalmall/>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2023년 4월 23일 검색).

내셔널 몰의 관리 및 운영 주체

- 내셔널 몰은 조성과정에서 세 명의 도시위원 및 관련 위원회에서 계획 및 관리했고, 이후 1800년대에는 여러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1900년대부터는 토지의 소유 주체인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으로 관리 등을 일원화(National Park Service 2023a)
 - 대통령 명에 따라 1790년대 내셔널 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 3인의 도시위원을 임명하고 1802년에는 공공건물 감독관(Superintendent of Public Buildings), 1816년부터는 공공건물 위원회(Commissioner of Public Buildings)에서 내셔널 몰의 계획 및 관리를 담당
 - 1849년 공공건물위원회에서 내무부 내 국립공원·건물 보전부로 관리 권한이 이전되었고, 1867년부터 미국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전쟁부(War Department)가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1925년에는 육군 공병대와 전쟁부의 역할이 대통령실(office of the U.S. President)로 이양
 - 1933년, 행정명령 6166(Executive Order #6166)에 따라 내무부 내 국립공원, 건물, 보전부로 토지 소유 및 관리 일원화

〈표 2〉 내셔널 몰 관리주체 변화

연 도	내 용	연 도	내 용
1790	3인의 도시위원 임명	1867	국립공원·건물보전부(내무부) / 육군 공병대, 전쟁부
1802	공공건물 감독관	1925	국립공원·건물보전부(내무부) / 대통령실
1816	공공건물위원회	1933	국립공원·건물보전부(내무부)로 관리 일원화
1849	국립공원·건물보전부(내무부)	1934	국립공원·건물보전부의 명칭을 국립공원관리청으로 변경

출처: National Park Service 2023a.

-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은 내셔널몰 관리를 위한 최상위 기관이며, 국가수도 계획위원회(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NCP)와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 NCMAC)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함께 계획하고 운영에 참여
 - 국립공원관리청은 내셔널 몰의 토지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타 부처와 기관 내 의견을 종합하여 내셔널 몰 관련 의견 조율 및 의사결정 진행
 - 2010년에 발표된 내셔널 몰 종합관리계획에서 총 21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
 - 1924년 설립된 국가수도계획위원회의 경우 워싱턴D.C. 내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계획 및 사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워싱턴D.C.와 주변지역 계획 주도
 -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는 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및 주변지역의 기념사업 정책과 기념비 사업 승인 등 담당

〈표 3〉 내셔널 몰 관련 주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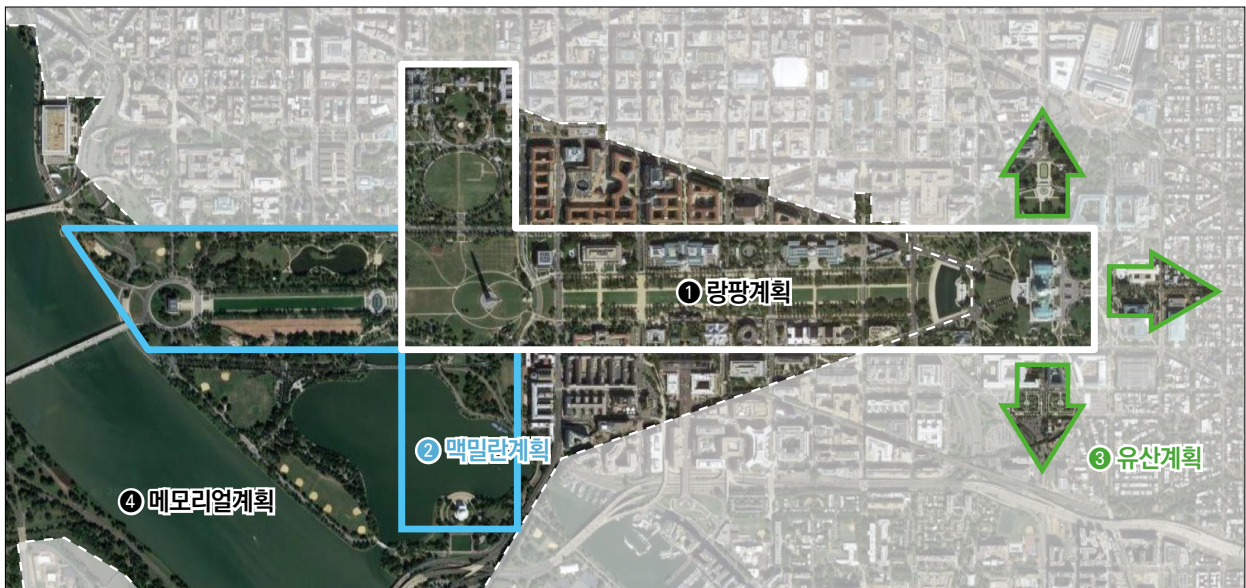
구분	설립 연도	설립 근거법	역할
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 NPS)	1867	행정명령 #6166	• 연방정부 소유 공공건물 및 공공공원 관리 총괄 • 내셔널 몰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연방정부 소유 토지 일부와 공공건물, 공공공원 관리 담당
국가수도계획위원회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NCP)	1924	국가수도계획법 (National Capital Planning Act)	• 국가수도종합계획 수립: 워싱턴D.C.와 주변지역 • 계획 및 사업 승인권한: 워싱턴D.C. 내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건물, 용도, 구조 등 • 위원회 구성(총 12인): 대통령 임명(3인, 임기 6년, 의장,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각 1인), 컬럼비아 주지사 임명(워싱턴D.C. 대표 2인, 임기 4년), 당연직(7인, 국방장관, 내무장관, 총무청 대표, 상원의장, 하원의장, 컬럼비아 시장, 컬럼비아 의장)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 (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 NCMAC)	1986	공법 §1004	• 컬럼비아 특별구 및 주변 지역의 기념사업 정책 논의 • 위원회 구성: 국립공원관리청장(의장), 국회의사당 건축가, 미국전쟁기념물위원회 위원장, 예술위원회 위원장,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위원장, 컬럼비아 주지사, 총무청 대표, 국방부 차관

내셔널 몰의 주요 계획

- 1791년 랑팡계획과 1902년 맥밀란계획에 따라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후 1997년 유산계획, 2009년 메모리얼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운영관리 지침이 수립되었으며, 2010년에는 내셔널 몰의 종합관리계획이 수립
 - 랑팡계획(L'Enfant Plan, 1791)은 피에르 랑팡이 작성한 워싱턴의 도시계획이며, 내셔널 몰의 위치 및 기능을 포함(National Park Service 2023b)
 - 1790년 미국의 수도로 워싱턴이 지정된 후, 대통령의 요청으로 프랑스 건축가인 피에르 랑팡이 워싱턴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랑팡계획으로 명명
 - 피에르 랑팡은 워싱턴 도시계획으로 축선을 활용하여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연결하고 국회의사당과 포토맥강을 잇는 연결축과 백악관이 교차하는 'L'자 형으로 내셔널 몰을 계획
 - 맥밀란위원회가 주도하여 수립한 맥밀란계획(McMillan Plan, 1902)은 내셔널 몰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국가상징공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진(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05)

- 1900년 당시 출범 100주년을 맞은 워싱턴D.C.의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원의원인 제임스 맥밀란(James McMillan)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랑팡계획의 원칙 강화 및 내셔널 몰 확장 등을 포함한 맥밀란계획을 발표
- 맥밀란계획은 내셔널 몰의 동서축(국회의사당-강)과 남북축(백악관-강)을 포토맥강까지 확장하여 현재의 '4자형' 축을 완성하고, 내셔널 몰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약 120m 내 버퍼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
- 랑팡계획과 맥밀란계획의 기본구상이 실현된 후 기념관, 박물관 등의 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설치하기 위해 유산계획(Legacy Plan, 1997)을 수립(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05)
 - 유산계획은 그간 계획된 주요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내셔널 몰 주변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기념관, 박물관 등 시설물의 설립 제안을 관리함과 아울러 도시 핵심기능의 확장을 위해 국가수도계획위원회가 수립
 - 내셔널 몰의 동서축을 국회의사당 너머로 확장하는 한편,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남북축을 확장하는 내용의 계획
-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계획(Memorials And Museums Master Plan, 2001)은 국립공원관리청이 주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메모리얼 부지와 박물관 계획 정비(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05)
 - 유산계획의 체계적인 실현을 위해 기존 계획들을 종합하여 기념축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념축을 따라 워싱턴D.C. 4개 구역에 100곳의 기념사업 부지를 제안
 - 기념비의 과잉 설립과 집중 현상을 해소하여 도시 전역의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그림 1〉 내셔널 몰의 주요 계획에 따른 국가상징공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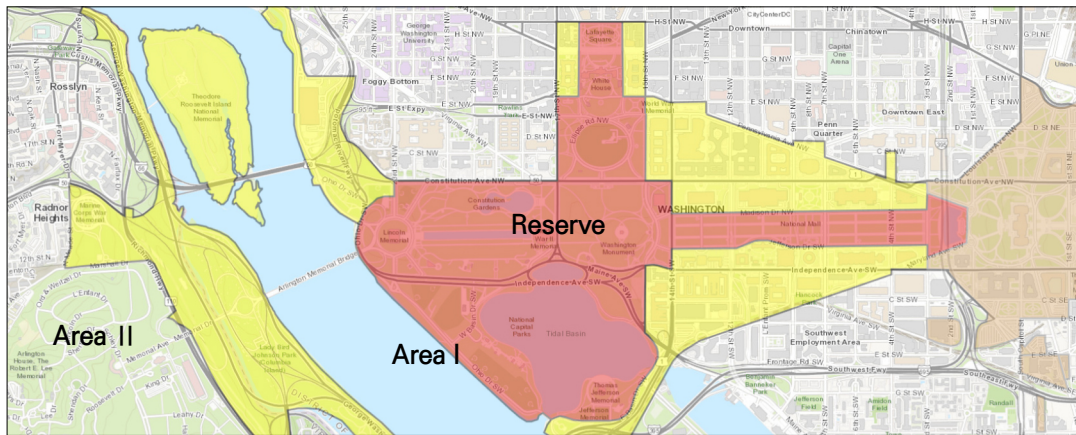
출처: 구글 맵(Google map)을 활용해서 저자 작성.

- 유산계획 이후의 계획들은 내셔널 몰의 위상 제고를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며, 동시에 주변 낙후 지역과 내셔널 몰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계획과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도 수립(NCPC 2023)
 - 2010년 수립된 내셔널 몰 종합계획(National Mall Plan)은 국가상징공간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려는 장기 계획으로 역사적 경관의 보존, 방문자의 요구 충족, 노후시설 교체 등을 포함
 - 2013년에는 내셔널 몰과 서남부 침체지역의 기능 연계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에는 내셔널 몰의 역사적 맥락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제기

내셔널 몰 관련 제도: 국가기념사업법(Commemorative Works Act: CWA)

- 내셔널 몰 내 국가상징 기념물 및 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계획의 유지가 어려워지자, 의회는 랑팡계획 및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CWA, 40 US Code § 8901)하기 위해 기념사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체계 마련(Congress Research Service 2021)
 - 1986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념사업법(Commemorative Works Act)은 국립공원관리청과 연방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소유의 연방정부 토지에 적용되는 법으로 워싱턴D.C. 내 기념사업의 승인, 디자인, 입지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의회는 기념사업법을 통해 국무장관, 연방총무청, 국가수도계획위원회, 미국미술위원회, 국가수도 기념사업자문위원회 등 연방계획기관에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승인 권한을 부여
- (대상) 기념사업법은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사건, 개인 혹은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사업을 승인(CWA, 40 US Code § 8903)
 - 군사 관련 기념사업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무력 충돌과 군대를 기념하기 위한 용도로 승인될 수 있으며 전쟁이나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10년 경과 후 승인이 가능
 - 군사 관련 기념사업 외 개인이나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은 해당 사건이 종료되거나 개인이 사망한 후,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에 속한 마지막 구성원이 사망하고 약 25년 이후 승인이 가능

〈그림 2〉 기념사업법 내 기념사업의 입지 분류



출처: <https://www.npc.gov/maps/the-reserve/> 일부 발췌(2023년 5월 22일 검색).

- (입지) 또한 내셔널 몰과 그 주변지역을 보존구역, 구역 1, 구역 2로 구분하고 구역별 기념사업의 목적과 사업승인 절차 등을 구분
 - 보존구역(Reserve): 보존구역은 이른바 ‘완성된 도시작품(a substantially completed work of civic art)’으로, 내셔널 몰의 +자형 지역을 포함하며 새로운 기념사업 추진을 금지
 - 구역 1(Area I): 구역 1은 미국 내 역사성이 우수하고 그 의미가 지속가능한 기념사업을 위한 구역으로 내무부 장관이나 연방총무청장이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국가상징 사업 추진 가능
 - 구역 2(Area II): 구역 2는 미국 국민에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한 지역

- (방법) 각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 전부와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 원칙(CWA, 40 US Code § 8903)
 - 기념공간 조성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해당 기념사업을 제안한 제안자의 부담이며,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제작 비용의 10%를 국립공원관리청에 납부하고 재원을 확보한 후 사업승인 신청
 - 별도로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기념사업은 승인 후 7년 이내 조성이 원칙이며, 초과할 경우 사업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

내셔널 몰 사례의 시사점 종합

- 미국 내셔널 몰은 약 200여 년간의 조성기간 동안 토지소유권자인 국립공원관리청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전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기념사업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미국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내셔널 몰을 완성
 - (관리 일원화) 내셔널 몰은 개인에서 위원회, 위원회에서 여러 정부 부처,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단일 부처로 관리체계가 변화했으며 최종적으로 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여러 부처와 협업을 통해 내셔널 몰의 개선, 관리계획 등을 수립
 - (전문위원회 참여) 국립공원관리청은 미국미술위원회, 국가수도계획위원회, 국가수도기념사업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내셔널 몰의 조성 및 관리를 진행
 - (기념사업법 제정) 의회는 기념사업법을 제정하여 내셔널 몰의 기본계획인 랑팡계획과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의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내셔널 몰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념사업의 필요조건을 명시하여 행정 효율화 및 전문화 달성

03 우리나라의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① 무엇을 상징하고, ② 어디에서 기억하고, ③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 기관 등에서 결정(예: 기념 사건이나 인물 관련 장소, 전쟁터 등)
 - 미국 내셔널 몰은 조성과정에서 기념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념사업을 관리하는 기념사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사건이나 인물의 최소 평가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준에 따라 국가기념사업을 심의하고 진행
 -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기념할 수 있는 국가적 사건, 인물, 이념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승인하는 절차와 감독할 수 있는 심의체계 구축
 - 국가상징대상 선정, 디자인 심의 등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 사안 및 절차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어디에서 기억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입지에 대해 필요한 입지 선정기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선정된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추진기구에서 구체적인 입지 제안
 - 1단계에서는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지여건을 심사하고, 2단계에서는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에서 구체적인 입지 대안을 제안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련 위원회 등에서 최종 입지 선정
 - 국가상징공간의 입지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또는 주변, 인물과 관련된 장소, 이념이 태동한 공론장, 국가의 성장과 함께한 장소 등을 고려 가능
-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자원 마련 다각화, 자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하여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
 - 국가상징공간의 상징대상, 입지 등을 고려하여 기념비, 기념광장, 메모리얼파크 등 국가를 상징하는 방안을 결정
 - 국가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직접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비용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비용 조달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예방
 - 사업비의 일부(예: 약 5~10% 내외)를 관리기금으로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상징공간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으로 활용

참고문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4인).
- 서울시. 2022a. 오세훈 시장, 광화문~한강 '국가상징가로' 도심 녹지생태 가로로, 10월 24일. 보도자료.
- _____. 2022b. 서울시,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 2배로 넓어진 공원 같은 광장, 1월 25일. 보도자료.
- _____. 2022c. 내 손안에 서울. '보행일상권'부터 '미래교통 인프라'까지...2040서울도시기본계획.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937> (2023년 5월 11일 검색).
- Congress Research Service. 2021. Commemorative Works Act. 40 US Code § 8901.
- Discover U.S. Government Information. National Capital Planning Act.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1997-title40/html/USCODE-1997-title40-chap1-sec71a.htm> (2023년 5월 11일 검색).
-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The Reserve Map. <https://www.ncpc.gov/maps/the-reserve/> (2023년 5월 22일 검색).
- National Park Service. 2003. Commemorative Works Act, 내부자료.
- _____. 2023a. National Mall & Memorial Parks, Chronology. https://www.nps.gov/nationalmallplan/Documents/106/Handouts/Mall_Chron_Signif_from_CLI%203-20-09.pdf (2023년 5월 11일 검색).
- _____. 2023b. The National Mall overview, 내부자료.
- NCPC(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2023. National Mall. <https://www.ncpc.gov/topics/nationalmall/> (2023년 4월 23일 검색).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05. Capital Mall Future: Future of the National Capital Mall. <https://www.doi.gov/ocl/capital-mall-future> (2023년 5월 11일 검색).

이 리포트는 2023년 1월 13일에 진행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총괄관리자(Chief of Staff)인 Sophia E. Kelly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심지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jisoosim@krihs.re.kr, 044-960-0329)

어은주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yzyu@krihs.re.kr, 044-960-0192)